

의안 검토 보고

의안 번호	제 14 호		
건 명	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2002. 8.21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김 재 근		

1. 검토내용

가. 제안이유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신설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o 별표에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을 신설함.

종 목	단 위	수 수 료	비 고
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	1건	5,000원	

2. 검토결과

본 개정조례안은

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개정되어 종전 서울시장에게 신고하던 신고체육시설업이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되었기 이에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,

주요내용은

별표중 2.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란에 23호로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 신고 수수료를 1건당 5,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,
 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
 - 동법 제22조에 신고체육 시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(99.1.18)하고 있으며,
 - 동법 제41조에 “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” 되어 있음.
 - 동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법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, 광역시, 도,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(2000. 3.28) 규정하고 있음.
- 동조례 개정 제안배경을 보면,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신고체육시설업 수수료 징수조례를 자치구별로 개정후 결과를 회신 요구하는(서울시 체청 82100-1022, 2002.5.7) 지침 시달이 있었음.
- 참고사항으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는 수영장업, 체육도장업, 볼링장업, 테니스장업, 골프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 에어로빅장업, 당구장업, 썰매장업, 무도화원업, 무도장업이며,
- 서초구의 시설현황은 수영장 6, 볼링장 7, 골프연습장 78, 테니스장 5, 체력단련장 35, 에어로빅장 16, 체육도장 50, 당구장 191, 무도화원 7 등 총 9개업종 395개업소(2002. 5.15)임.
- 수수료 산출근거는 서울시 조례에 5,000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서초구 조례에서도 5,000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위 내용을 종합검토한 바,
 - 체육시설 설치관련 법령에서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 -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3. 참고사항

□ 관련법령
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, 제1항, 제22조, 제41조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
- 지방자치법 제128조, 제130조

[관련법령]

◀ 체육시설업 설치의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, 제9조, 제41조 ▶

제10조 (체육시설업의 구분·종류)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1999. 1. 18, 1999. 3. 31>

1. 등록체육시설업 : 골프장업·스키장업·요트장업·조정장업·카누장업·빙상장업·자전거경주장업·승마장업·종합체육시설업
2. 신고체육시설업 : 수영장업·체육도장업·볼링장업·테니스장업·골프연습장업·체력단련장업·에어로빅장업·당구장업·썰매장업·무도화원업·무도장업

제22조 (체육시설업의 신고)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1999. 1. 18

제41조 (수수료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 1. 18>

1.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
2.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
3.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

◀ 체육시설업의 설치·의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▶

제38조 (수수료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1996. 5. 30, 2000. 3. 28>



- 제128조 (수수료)** ①지방자치단체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130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** ①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